

■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[별표] <개정 2026. 4. 21.>

사무기구의 공무원정원표

총 계	391
정무직 계	2
사무처장(국무위원급)	1
사무차장(차관급)	1
특정직 계	93
헌법연구관	93
특정직 또는 일반직 계	13
헌법연구관 · 관리관 또는 법원관리관(1급)	1
헌법연구관 · 관리관 · 법원관리관 · 이사관 또는 법원이사관 (1급 또는 2급)	1
헌법연구관 · 이사관 · 법원이사관 · 부이사관 또는 법원부이사관(2급 또는 3급)	2
헌법연구관 · 부이사관 또는 법원부이사관(3급)	1
헌법연구관 · 부이사관 · 법원부이사관 · 서기관 또는 법원서기관(3급 또는 4급)	1
헌법연구관 · 서기관 또는 법원서기관(4급)	3
헌법연구관 · 서기관 · 법원서기관 · 행정사무관 · 법원사무관 또는 검찰 사무관(4급 또는 5급)	4
별정직 계	2
비서실장(1급 상당)	1
비서관(5급 상당)	1
일반직 계	281
관리관 · 법원관리관 · 이사관 또는 법원이사관(1급 또는 2급)	1
이사관 · 법원이사관 · 부이사관 또는 법원부이사관(2급 또는 3급)	4
부이사관 · 법원부이사관 · 서기관 또는 법원서기관(3급 또는 4급)	4
부이사관 · 법원부이사관 · 사서부이사관 · 기술부이사관 · 서기관 · 법원	1

서기관·사서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(3급 또는 4급)	
부이사관·법원부이사관·서기관·법원서기관 또는 별정직 (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)(3급 또는 4급)	1
서기관 또는 법원서기관(4급)	10
서기관·법원서기관 또는 사서서기관(4급)	2
서기관·법원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(4급)	2
서기관·법원서기관 또는 별정직 4급 상당(4급)	9
서기관·법원서기관·행정사무관·법원사무관 또는 검찰사무관(4급 또는 5급)	11
사서서기관 또는 사서사무관(4급 또는 5급)	2
기술서기관 또는 전산사무관(4급 또는 5급)	1
기술서기관·기계사무관·전기사무관·토목사무관·건축사무관·시설 사무관·방송통신사무관(4급 또는 5급)	1
행정사무관·법원사무관·검찰사무관 또는 건축사무관(5급)	45
행정사무관·법원사무관·검찰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 상당(5급)	1
행정사무관·법원사무관·전산사무관(5급)	1
사서사무관(5급)	2
전산사무관(5급)	6
행정주사·법원주사·검찰주사 또는 속기주사(6급)	26
행정주사·법원주사·검찰주사 또는 별정직 6급 상당(6급)	11
사서주사(6급)	2
전산주사(6급)	6
전산주사·기계주사·전기주사·토목주사·건축주사·시설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(6급)	4
행정주사보·법원주사보·검찰주사보 또는 속기주사보(7급)	19
사서주사보(7급)	4
경위주사보(7급)	1
전산주사보(7급)	4
기계주사보·전기주사보·토목주사보·건축주사보·시설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(7급)	4
보건주사보(7급)	1

행정서기·법원서기(8급)	3
사서서기(8급)	2
경위서기(8급)	2
사무서기(8급)	14
전산서기(8급)	1
보안서기(8급)	2
사서서기보(9급)	1
속기서기보(9급)	1
경위서기보(9급)	1
사무서기보(9급)	20
보안서기보(9급)	23
교환서기보(9급)	1
관리서기보(9급)	11
보건운영서기보(9급)	3
기록연구관	2
기록연구사	1
전문경력관 가군(보안관리 및 물품 담당)	1
전문경력관 나군(촬영 담당)	2
전문경력관 나군(공보 담당)	1
전문경력관 나군(비상계획 담당)	1
전문경력관 다군(물품 담당)	1
전문경력관 다군(촬영 담당)	1